

실·질·적·군·문·제·해·결·과·군·가·산·제·존·치·방·안·철·회·를·위·한



전국대학비상대책위원회

낮/은/시/선

저 령

군가산제 제도, 지금까지의 경과

장애인, 여성 그리고 군가산제

군가산제제를 둘러싼 논쟁

군가산제 논쟁과정에서 드러난 사이버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군복무 제도의 변화를 위한 분석과 대안

군대, 남성이대올로기와 가부장적 사회 재생산의 보루

'낮은시선'을 제안합니다.

신진작군문예상
군가산제문제에관한
연구보고서
전국비상대책위원회
낮은시선

군가산제 존치방안철회!

사회적 약자의 눈, 낮은 시선으로 군가산제 문제를 보는 것에서부터 평등권 실현의, 군의 근본적 문제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시도일 것입니다.
군가산제 문제를 '낮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약자의 눈으로 올바르게 해결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성계와 장애우운동 단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의 평등권을 쟁취하고자 98년 헌법소원에서부터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서명전과 집회 및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이슈화되기도,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지난하고 지리한 투쟁이었다. 이러한 헌법소원의 심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99년 12월 위헌 판결이 났다.

그러나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 위헌판결 10일만에 국가보안경력 가점제 및 군가산제를 확대 강화하는 형태의 '군가산제 존치방안'이 발표되었다. 이에 1월 8일을 기점으로 전국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건강한 젊은이들의 군대에 대한 불만'이 다양한 방식으로 폭발하는 것을 보았다. 폭탄 메일과 욕설, 여성운동을 상징하는 이대 및 여성단체들의 홈페이지 해킹등으로 그 분노는 폭발되었다. 하지만 실제 군가산제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군대의 희생자(?)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군가산제로 상징화되어 있는 현재의 보상체제를 위협하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군가산제 문제는 생각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여성, 장애인, 군미필자의 입직과정의 기획박탈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평화 군축의 문제와도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하기에 현재의 남녀대결구도로 그려지고 있는 군가산제 문제라고 아니라 근본적인 군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한 보상체제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방향의 논의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현재 군가산제 투쟁 역시 올바른 담론을 만들어 내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투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자료집은 우리의 담론을 만들어 내기 위해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하기 위해 여성노동, 장애인권, 평화군축, 법리적 차원에서 군가산제 문제의 글을 실었다. 이 글을 통해 내부의 교양 및 계획, 전략 마련을 위해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세적으로 역시 4월 총선이후 통과될 여지가 있는 존치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자료집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 전/국/대/학/비/상/대/책/위/원/회

군가산점 제도, 지금까지의 경과

여성노동

군가산점제는 제대군인이 군복무 기간중 겪은 개인적 희생과 사회적 기회상실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군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의 7급, 9급 채용시험 만점의 3%~5%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가산점 비율이 너무 높아 군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과 장애인 및 군미필자들은 100점 만점은 받아도 채용시험에서 떨어지는 등의 군미필자의 공직진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98년 10월 19일 공무원 시험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장애인 1인과 여성 5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이와 더불어 장애인 단체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서명전과 집회 등을 통해 이 제도의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결국 99년 12월 23일 '헌법이 강도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인 평등권 위배'라는 측면과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 취업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공무담임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는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후 10일만인 2000년 1월 6일 집권여당인 국민의회의가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국가보훈사령관 가산점제로 변경한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군미필자들의 경우 국가가 지정하는 사회봉사단체에서의 사회봉사 1개월에 0.1%씩 최대 3%의 가산점을 줌으로써 제대군인과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국가보훈사령관 가산점제의 요지이다. 뿐만 아니라 예전의 군가산점제에 비해서 보다 훨씬 군미필자들에 대한 차별이 확대 강화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신규 채용 및 임용시 연장자 우선 채용방안과 군 복무 기간의 취업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호봉합산과 승진시 혜택을 주고, 공기업에만 적용하던 것을 세계해택을 주는 것을 전제로 민간기업까지 확대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거의 지난해 여성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마되었던 병역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군가산제 존치안이 발표된 이후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간 연대모임인 '여성노동' 모임을 중심으로 군가산제 완전철폐, 근본적 군문제 해결, 평등권 쟁취를 위한 전국대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조직하고, 1월 8일 국회의원회 당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지면서 각 대학의 총학생회와 여성위원회, 그리고 전국대학생에바다연대회의 등 대학 내의 장애인 인권운동단위로 비대위를 확대제안해서 비대위는 현재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비대위는 그 이후 몇 번의 집회와 선전전 등을 조직하였으며, 사이버 상에서의 남성들의 테러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군문제 - 강제징집제나 군대 내에서의 인권유린, 병역비리 등 - 까지 고민의 범위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군가산점은 입직과정에서의 성차별을 강화한다.

군가산점 군복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은 아니지만 현

실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보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취업하려는 여성에게 있어서 군가산점은 재앙이다. 이미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기업의 남성선호라는 장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군가산점은 여성의 취업장벽을 인정하지 않는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공무원 시험에서 당락을 결정지어왔다. 군가산점이 현재의 당정안대로 시행된다면, 현실적으로 군가산점이 확대설시되는 효과를 낳아 여성의 취업조건은 더욱 악화할 것이다.

노동 시장에 여성이 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직접적으로 기업이 출산과 육아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명목으로 여성을 뽑기를 꺼려하는 데에 기인하며, 여성 노동자가 이에 저항할 수 있을 만큼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데에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사안에서의 성폭력과 성차별은 승진과 호봉에서의 차별과 함께 여성의 노동 조건을 열악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 시장 문제점은 IMF이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IMF이후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진행되어 올해에 드디어 비정규직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여성 노동자 전체의 70%를 넘어섰다. 이는 남성 노동자의 40%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임금 격차 역시 늘어나 남성 노동자의 60%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 여성노동자는 정리해고와 계약직, 임시직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일차 대상이 되어왔던 결과이다.

여대생의 경우 취업하는 데에 있어서 고용차별로 인해 취업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취업을 포기하고 자발적인 실업자로의 합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50%가 취업에 자신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85%정도가 취업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기업이 여성을 뽑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꼽고 있다. 또한 99년 2월 여성민우회에서 실시한 5개 대학교와 2개 전문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취업의사가 있으나 취업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기술, 자격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학벌, 학력차별(여성 19.7% 남성 7.9%)과 경력(여성 16.5% 남성 10.5%), 연령(여성 9.4% 남성 5.3%)에서는 여성응답률이 남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특히 모집채용상 성별제한, 외모에 대해서는 여성의 응답만이 나왔다. 또한 구직활동을 했던 적이 있던 여성응답자 174명 중 92명(52.8%)이 구직과정에서 연령제한, 직종제한, 신체 및 외모, 업무내용, 군가산제, 결혼여부 등의 순으로 성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모집채용상의 성차별이 여전히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입직과정에서의 성차별이 일반적으로 구조화되어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여성우선해고의 칼날에서 비교적 안전한 공무원 채용에까지 적용되는 3~5%의 군가산점제로 인해 신규여성실업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이 공무원 채용이라는 것은 하급공무원의 30%가 여성이고, 5급이상의 관리직 공무원에서 여성의 비율은 4%이다.(선전국은 10%~47%, 일본은 8.6%)

99년 이후 대졸 여성실업자 수는 1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년만에 네 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구직활동을 포기한 여성실업자들을 포함하지 않은 공식실업률임을 감안한다면 실제 고학력 여성실업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월 5일자 여성신문을 보면 취업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여성들의 고충이 절절히 드러난다.

실질적인 군문제해결!

홍주연 씨(학원강사, 25세)는 98년 2월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지금 세 번째 임용고시를 준비 중이다. 이도저도 뚫리지 않는 방법 없는 사람들이 국가고시에 매달리는 심정으로 그도 3년째 임용고시에 매달려 있다. 그의 친구들 중에도 학원강사나 학습지 방문교사로 일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학원은 그나마 다른 직종에 비해 여자들을 선호하는 편이예요. 그런데 요즘은 학원강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월급을 계속 깎거나 아니면 수업시간을 늘리니까 힘이 들죠. 임용고시만 붙으면 그만 둔다는 심정으로 하는 거지만 이번에도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또 준비할 수 있을지 이제는 자신이 없네요." 요즘 들어 부쩍 수업이 많아져서 공부할 시간도 줄어들고 항상 피곤한 상태라 오는 5월 시험은 작년보다도 준비가 부실하다. 홍주연 씨는 시험날짜가 다가올수록 반쯤은 자포자기한 심정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말한다.

해고의 칼날을 피해 정규직으로 남는 다해도 중요한 업무는 여전히 남성들에게만 맡기고 있으며, 여성들의 승진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실에서 군가산점을 승진에 반영하고 호봉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직장내 성차별을 심화하는 방안이다. 덧붙여 여성은 취업에 불안을 느끼면 마지막 보루(?)로서 결혼을 하면 된다는 자포심에 노동권을 포기하고 자발적인 실업자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실업자 통계수치에 나타나지 않아 더욱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앞으로의 군가산점 투쟁은 군가산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군대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동시에 여성취업 현실을 알려나가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군가산점이 남성과 여성의 대결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군가산점이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군가산점 폐지가 이기주의라는 발상에 대해서 현실에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미'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나가고 그들로 하여금 여성의 취업 현실을 고민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군가산제 존치방안철폐!

장애인, 여성 그리고 군가산제

김도현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정책국)

0. 들어가며-한 장애인의 공무원 시험 도전기

3급 지체장애인 정강용 씨(39)는 대학졸업 후 88년도부터 여러 차례 일반 기업체의 공채에 응시했지만 장애에 대한 편견 속에서, 필기 시험에는 합격하고도 매번 면접에서 탈락하는 일을 되풀이하게 된다. 이후 일반기업체의 취업을 포기하고, 7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매달린 그에게 군가산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은, 이 제도가 장애인에게 있어 당위적으로 이야기는 하는 '평등권의 침해'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얼마나 부당하고 차별적인 제도인지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강용 씨는 91년 총무처 주관 7급 행정직 공채 시험에 응시해서 82.22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다. 이 점수는 당시 가산점이 없는 상태에서는 응시자 가운데 차석을 차지한 높은 점수였다. 하지만 결과는 차석의 높은 점수를 받은 그는 탈락하고, 실제 시험 점수 78.33을 받은 군필자

가 그를 밀어내고 가산점 5%를 더해 83.33점으로 시험에 합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와 같이 시험에 응시한 동기생 한 명 역시 81점을 받고도, 가산점 5%를 더해 86점으로 전체 순위 5등의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이후 군가산점을 만회하기 위해 하루 13시간씩 공부하는 강행군을 한 그는 다음해인 92년과 93년에 다시 7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했지만 결과는 가산점으로 인한 불합격이었다. 93년의 경우 충청남도 7급 행정직 시험에서 그는 점수로 합격자 45명중 28등이었지만 가산점이 적용되자 133등으로 밀려나게 되었던 것이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 대개 합격점이 매우 높고 경쟁이 치열해 소수점 아래에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가 응시한 93년도 충남 행정직 공채 시험에서도 불합격 처리된 46등 동점자가 13명이었는데, 45등과 46등의 점수차는 1점도 아닌 0.56점 차이에 불과했다. 이렇게 박빙의 점수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군가산점 5%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과 여성이 공채 시험에서 합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이러한 제도적 불합리성 때문에, 예전 공무원 채용 시험을 주관했던 총무처 통계에 따르면 6급 이하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지 않고 합격한 사람은 3%미만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1. 남녀의 대립구도 속에서 파묻혀 버린 장애인의 입장

실질적인 군문제해결!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하는 데에 가산점 제도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사정이 변화하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은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는 현실에서, 가산점 제도는 공직에 진출하려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인 제약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공무원이야말로 장애인에게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공정한 경쟁시장이라는 점이다. 사회적·문화적 편견으로 말미암아 장애인에게 능력에 맞는 취업의 기회를 민간부분에서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공무원 채용시험은 국가가 능력주의와 평등원칙에 입각하여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또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들을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마치 차별을 가한다면 그만큼 이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 된다. 헌법이 강도 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이다. 그러므로 법익의 일반적·추상적 차원에서 보거나, 차별취급 및 이로 인한 부작용의 결과가 위와 같이 심각한 점을 보거나 가산점 제도는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제도라는 결론에 이르지 아니할 수 없다.'

위 내용은 작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군필자 가산점 위헌 판결문중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의 요지이다.

여기서도 나타나듯이 장애인은 여성과 함께 군가산제의 가장 심각한 제도적 피해자였고, 군가산제에 대해 가장 먼저 위헌소송을 제기한 사람도 위에서 언급된 장애인 정강용 씨였다. 그리고 위헌 판결을 직접적으로 이끌어 내었던 98년 10월의 헌법 소원에서도 장애인 김형수 씨(지체

장애 2급, 연세대 국문 95)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의 군가산제에 대한 위헌판결, 이어서 벌어진 남성들-정확히는 비장애인 남성들-의 분노 어린 반발과 집권당의 군가산제 존치안 발표로 이어진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많은 장애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올바르게 정점화 되지 못하고 남여간의 대립구도로 굳어진 채, 비장애인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어 버린 감정적인 논쟁의 흐름. 그리고 그 속에서 이미 발언의 기회마저 제약된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허탈감과 씁쓸함, 그리고 또 한번 이 사회에서 장애인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가를 확인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가장 격심한 논쟁과 실력행사(?)가 벌어진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여론의 왜곡을 이야기하기 위해 종종 언급된 '통신 공간에서의 남녀 비율 80:20'. 그러나 이미 이러한 계산법에서도 '장애인'이란 정체성을 지닌 집단에 대한 고려는 생략되고 있었고, 이 후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언론마저 이 문제를 남녀 대결의 구도로 몰아가면서 주체적 발언의 힘을 갖지 못한 채 그러한 논쟁의 구도 속에 파묻혀 버리거나, 또는 일부 사례 깊은(?) 비장애인 남성들에게 간혹 동정적이고 왜곡된 시선으로 언급되는 정도에 그치게 된다.

2. 군가산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우리가 확인해야 할 몇 가지 것들

군가산제 존치방안철회!

군가산제가 왜 부당하며, 어떻게 결론지어져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 사실 새롭게 제시할 어떤 썸박한 논리는 없다. 이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의 가닥을 잡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도 제기되고 있듯이, 군대라는 공간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간에 군대라는 제도, 그리고 이로부터 기이하게 파생된 군가산제라는 제도가 어떠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어떠한 아픔과 문제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해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선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기 위해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지점들을 간단히 언급해 보기로 한다.

2-1. 남성과 비장애인은 이 사회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비장애인/남성 중심의 사회구조와 작동 메커니즘. 그리고 이러한 기반 위에 형성된 문화 속에서 장애인과 여성이 일상적인 차별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군가산제 문제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사실 구태의연한 이야기일 수 있다. 그리고 비장애인과 남성들은 이러한 것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군대라는 영역과 조직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없는 남성에게 점유되고, 남성의 의무 또는 권리로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금은 거시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남성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인간의 상상력은 종종 영화나 문학작품에서, 조금은 극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로 이와 반전된 여성이 지배하는 사회의 모습을 그려내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묘사된 사회의 모습에서 공동체를 수호하는 '군대'는 거의 항상 여성이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인간의 역사는 여러 가지 사건을 중심 축으로 하여 서술될 수 있을 터인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전쟁'이다. 인간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이기도 했다는 것은 원시공동체를 넘어서 제도화된 정치체제와 권력이 발생한 이후로, 왜 한 번도 여성 중심의 사회체제가 존재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한가지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하나의 독립된 정치공동체가 자신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투쟁이 일상화되면서, 즉 전쟁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대외/대내적으로 중요해 지고 직접적인 형태의 폭력이 사회적 권력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면서, 군대라는 것은 한 공동체 내에서 권력을 가진 집단이 점유해야 할 매우 중요한 영역일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서 남성중심의 권력구조는 항상 남성이 군대를 책임지는 형태를 필요로 했으며, 이것은 여성이 단지 물리력이 남성에 비해 모자랐기 때문에 군대라는 조직에서 제외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군대라는 조직의 발생 초기에는 아니었을 지라도-을 일깨워 준다. 고대 그리스의 노예제 사회 속에서 군대를 갈 수 있는, 그리고 가야만 하는 권리와 의무는 결코 노예에게 주어

실질적인 군문제해결!

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군대라는 조직과 그 권력을 남성이 점유한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2-2. 헌법 재판소가 군가산제에 대해 위헌 판결-그것도 만장일치로-을 내린 것에 대한 의미의 확인.

군가산제에 만장일치의 위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에서 지니는 위상과 성격을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은, 감정적인 논쟁의 벽을 넘고 있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의 유효한 참조 지점이 될 수 있을 듯 싶다.

헌법 재판소는 하나의 '권력' 기구이다. 우리가 흔히 그리고 임의적으로 나누듯이 현대 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분립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사법권력의 가장 정점에 위치하는 권력기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근본적으로 피억압자의 편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기구가 아니며, 현 권력 관계와 지배형태를 명시적인 형태로 규정하고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 이데올로기'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한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보다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많은 사람들은, 법이 결코 만인에 대해 평등하지 않음을, 그리고 현재의 법 체계가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실질적/결과적 평등을 받아 안을 수 없는 상태임

을 인정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군가산제 위헌 결정은, 군가산제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부' 여성이나 장애인의 이기적인 요구라기보다는, 기껏해야 기회의 평등만을 보장할 수밖에 없는 현 사회 시스템 안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진보적인 어떤 단체도,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여성주의나 장애인의 권익의 편에 서 있는 어떤 단체도 아닌 것이다.

2-3. 군대를 다녀온 대다수의 남성들에게 군가산제는 '상징적'-실질적이 아니라-보상제도이다.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5%는 그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이건 아니건간에,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그걸 보면서 이땅의 어둠의 자식들은 그 래도 조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해주는 구나, 청춘을 바친 보람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위 글은 현역으로 제대했다는 한 예비역 남성이 한 여성단체의 게시판에 올린 글의 내용 중 일부이다. 여기서도 나타나듯이, 그리고 대부분의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도 인정하듯이 그들이 그렇게 분노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군가산제에 의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한창때 2-3년이라는 시간을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허비한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아무런 인정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에서 느끼는 박탈감 때문이다.

군가산제 존치방안철회!

이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다음의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 중 대부분에게는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제도로 인해, 위에서 보았듯이 극심한 고통과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르고 타당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군가산제는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약을 가하는 제도라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즉 같은 시간동안 같은 고통을 겪은 남성들에게 국가가 동등한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일정한 점수를 '박탈'하는 제도인 것이다.

2-4. '보상'은 여타의 사회구성원들에게 차별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되었지만, 군가산제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군복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아니다. 개별 남성들에게 있어 군대는 분명 회피하고 싶은 의무일 수밖에 없고, 그 개개인이 군대에 가는 것에 대해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일정한 방식의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현재의 판결문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군가산제는 그것이 장애인과 여성에게 기회의 불평등을 강요하게 된다는 것. 그리하여 노동권

의 확보에 있어 이미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그들의 차별을 더욱 강화시킨다. 점에서 문제가 된다. 여타의 사회구성원들에게 차별과 불평등을 발생시킨다면 그것은 이미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의 특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는 여러 가지 방안들(연말 정산시 군복무자에 대한 세제제공, 군복무 기간의 단축과 봉급의 현실화, 군 환경에 대한 개선 등)을 현실화 시켜내기 위한 노력과 실천이 단지 장애인과 여성들뿐만 아니라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의 참여 속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나가며

대다수의 여성단체는 물론, 얼마 안되는 장애인 단체마저도 군가산제 문제에 대해 현실적 한계를 느끼며 손을 놓아버린 지금, 가쁜 호흡을 가다듬어 가며 여전히 투쟁을 준비하는 단위가 있다는 것에 반가움과 함께 미안함을 느낀다. 한편으로는 이 글이 현재의 왜곡된 지형 속에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적어도 군가산제, 그리고 이와 다양한 형태로 연동되어 있는 이 사회의 모순된 제도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과는 그러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정도의 의미는 있으리라. 그리고 이후의 즐겁지만은 않을 수 있는, 지난하고 험거운 투쟁의 과정에 있어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함께 모으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논쟁

서울대 사회학과 정진성

1. 문제제기

1961년부터 공무원 채용 시 제대군인에게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가산점제가 시행된 이래, 이 제도는 합격점이 매우 높은 이 시험에서 여성과 장애인 등 군비필자의 진출을 거의 원칙적으로 막으면서, 공무원 채용 시험 외의 다른 많은 사회 분야에도 군필자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도록 하는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제도로써 지속되어 왔다. 1990년대에 들어 여성운동의 증대된 힘에 의해, 이 제도의 문제점이 체계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1998년 민간기업에도 군필자 호봉승인을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수립과 이에 대한 여성단체의 반대, 그 결과로서 개정 유보를 이끌어낸 것을 시작으로 해서, 1999년 12월 23일 가산점제의 위헌 판결로부터, 2000년 1월 6일 국회의원회의, 여성, 장애인을 포함하는 군비필자에게도 해당되는 국가보훈장려금제도에 대한 이르는 숨겨진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사회는 군가산점제를 둘러싸고 들끓는 듯했다.

문제제기는 장애자와 여성 등 이 제도의 피해자들이 했으며, 이에 대해 분노를 터트린 집단은 물론 제대군인과 앞으로 군대에 갈 남자들이었다. 따라서 논쟁은 장애자, 여성 대 제대군인, 장래 군 입대자의 양대 집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차츰 소수집단인 장애자가 빠지고 남자들은 군에 간 사람과 안 간 사람이 뿔뿔이 떨어진 집단으로 되어, 여성 대 남성의 싸움으로 변해갔으며, 제도 자체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감정대립으로 변해갔다. 여성들의 입장은 군가산점제의 폐해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인데 비해, 남자들의 태도는 억압된 군대생활과 그로 인한 손해에 관한 분노였다. 따라서 논쟁은 이성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흘렀으며, 그 대부분은 분노에 찬 군필자들의 여성에 대한 욕설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남성들의 분노가 군가산점제의 무효화라는 사실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상징되는, 2년 반 동안의 군복무가 갖는 사회적 가치가 무효화되었다는 상실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은 군복무 기간에 얻은 것 없이, 억압적 상황으로 인한 고통이 매우 컸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큰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그러한 상실감이 비교대상이 되지 않은 장애인이나 여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안 갈 수만 있다면 안 가겠다'는 군대에 '안 갈 수 있는' 남성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점이다. 그 군대에 안간 남자들은 숨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군대의 여러 문제점과 남성들 간의 계층 갈등까지 싸안으면서 여성들이 이 거대한 싸움의 최전방에

나와 있는 것이다.

어떤식으로든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가운데, 우리는 이 문제의 쟁점들을 명확히 정리하고 여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하여 철학적, 논리적 입장을 견실하게 다져야 할 시점에 있다.

이 글은 지난 1998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보다 최근에 지난 12월 그서의 위헌판결이 나온 이후 집중적으로 전개된 논쟁들의 갈등구조를 살펴보고, 논쟁 중에 제시된 여러 다른 대안들이 어떠한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등과 차이에 관한 시각에서 대체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2. 경과

1961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군가산점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성장한 여성운동에 의해 강력하게 비판받아 왔으며, 1997년 독립적인 법률화 과정에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다. 이것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이래, 대체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 각 분야의 노력이 현재 경주되고 있다. 그 경과를 대체로 다음과 같이 네 시기로 나누어 요약할 수 있다.

1) 제대군인가산점제의 시행: 1961년-

정부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규정에 의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중에서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및 종업원수 20일 이상의 민간기업 (제조업은 종업원수 200인 이상)이 모든 직급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민간기업에게는 별적조항없는 권고사항으로서),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5%, 2년 미만 복무한 군인에게 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1961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정경자, 2000) 이 내용은 1984년 8월에 제정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문화되었다. (김영림, 1995)

2) 문제제기 및 개혁의 시도: 1990년대

군가산점제는 국가가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정당한 목적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합격점이 90점 이상인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5점의 가산점은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것이어서,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들의 이 방면의 진출을 체계적으로 막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되었다. 따라서 이 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 집단인 장애자와 여성측에서 그 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1980년대 후반부터 일기되었다. 1994년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들이 행정쇄신위원회에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행정쇄신위원회는 3.5%였던 가산점 비율을 1.5-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그것은 여러 분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고 말았다.

실질적인 군문제해결!

3)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 법률화와 여성단체의 이의 제기: 1997-1998년

정부와 국회는 그 동안 국가유공자에우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을 근거로 시행되었던 군가산점제의 내용을 분리하여, 1997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8년 8월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여성계는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으며,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해, 1998년 32회와 34회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이 두 차례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8개 관계부처 장·차관회의를 거쳐 공무원 여성채용목표제가 끝나는 2000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합의하고, 동 시행령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명문화하게 되었다.

한편, 1998년 7월 14일 병무청은 군가산점제가 적용되는 동일한 범위에 대해, 신규채용시 호봉, 승진에 군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삽입하고, 공익근무요원에게도 이 혜택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이행치 않는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조항도 삽입한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기간 확립방안'을 비롯한 제반 병역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으나, 여성계 등의 반대로 유보되었다.

4)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 판결과 여당의 새로운 제안 및 시민사회의 강력한 대응 :1999.12.23-

군가산점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운동단체, 장애인 단체들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1998년 4월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제에 피해받고 탈락된 한 장애인이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했다. 1998년 10월에는 여대생 6명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999년 12월 23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위헌판결이 이루어졌다.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가산점제도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그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 판결로 인해 가산점제를 규정한 법조항이 즉각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판결 이후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논쟁이 불을 붙여 놓은 듯 끓어올랐으며,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방은 가히 남녀간의 전쟁이라 할 만했다. 앞서도 언급한대로 논쟁의 온도를 높인 것은 제대군인들의 분노였다. 어떻게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 속에서 국민회의는 2000년 1월 6일, 제대군인 외에도 봉사활동시 1개월당 0.1%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봉사활동의 범위와 내용, 시간 등의 불분명함을 비롯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졸속안이라는 비판을 여러 층의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3. 갈등의 축

군가산제 존치방안철회!

이 문제의 중심에 놓여 있는 제대군인과 현역 군인, 앞으로 군필자가 될 젊은 남성집단은 대체로 다음의 세 집단과 갈등을 이루면서 군가산점제의 공방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제법 하나의 집단을 이룰 만큼 선명한 성격을 드러내는 군에 가지 않은 남성 집단, 군에 갈 수 없는 장애인 집단, 그리고 징병에서 제외되었으나 지원에 의해 군에 갈 수 있는 여성집단이 그것이다. 첫째 집단이 사회적 강자이면서, 병역비리와 얽혀 있는 집단이라고 한다면, 둘째 집단은 명백한 약자 집단이고, 마지막 여성은 성역할의 분리, 평등과 차이에 대한 관념에 기초하여 나성과 구별되는 집단이다. 첫째 집단에 대해서는 너무도 분노하고, 두말할 것도 없이 그 갈등이 없어져야 마땅하여 논쟁할 여지도 없지만, 그 그림자가 또한 너무도 짙고 잠을 길 없으며 그들 하나하나를 그림자 속에 숨어 나타나지 않으므로 싸움은 애초부터 포기되고 있는 듯하다. 약자인 장애인 집단과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수가 적고 그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면하면서 논쟁할 의지를 잃는 듯하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부터 힘이 증대되면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반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진다.

1) 계층과 부패의 문제

"돈 있고 백 있는 집 자식들은 알아서 다 빼주고 우리 같은 서민 자식들만 가는데 누가 흔쾌히 가겠느냐. 군필자들이 가산점 문제에 대하여 흥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한 군필자의 말) 우리 사회에서 병역하면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비리'이다.(안영민) 병역비리문제는 고질병처럼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선거 등의 일이 있을 때면 여지없이 터져 나오곤 한다. 후보자나 그 자제들의 군복무 상황을 보면 징집면제가 태반이며, 정치권을 벗어난 부유층에 있어서 그 상황이 더욱 심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짐작하고 있다. 그것은 상류층의 당연한 행태처럼 인식되어 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때 이것도 특권층의 편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인식되는, 6개월 장교 복무, 단기간의 방위복무, 동등의 여러 제도들도 비리와 관련없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반 교육수준이 낮은 서민층에는 제외된 부분이었다. 그러한 특수한 제도는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근무조건이 좋은 특수부대, 장교 복무 등은 여전히 낮은 계층에게는 닫혀 있다.

상류층 모두가 병역비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군문제를 계층문제로 직결시키는 것에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군필자 및 현역 입영대상자들의 불만이 부당하게 징집에서 제외된 층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래서 자신들이 억울하게 징집된다고 하는 박탈감,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나마 군가산점제마저 폐지되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상실감에 있다는 점을 직시한다면, 계층문제가 그 핵심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부패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은, 이 문제의 해결방안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2) 소수집단 문제

주지하는 대로, 현재 우리 군대에는 교육, 신체 상태 및 범죄 등으로 인한 복무 형태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정도로 보면, 고졸 이상으로 3급 이상의 신체등위를 받은 남성이 현역 징병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중퇴자는 3급 이상이라도 보충역이 되며, 중학 중퇴 이하는 제2국민역이 된다. 신체상태로 보면, 정신박약, 맹인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자 등급 1-6급인 사람 등은 병역면제를 받으며, 그밖에 신장, 체중 및 여러 가지 질병 및 신체 이상으로 징병 신체검사의 판정에 따라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 면제를 받기도 한다. 또한 범법자들도 실행경중에 따라 각기 현역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고아, 귀화자, 혼혈아 등도 제2국민역으로 분류되며, 전몰 군경 및 순직군인, 전상군인 등의 가족으로 현역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다. 그중 마지막 전몰 군경 등의 가족만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로 보상받고 있을 뿐, 교육정도가 낮은 집단, 전과자 및 장애자, 고아, 귀화자, 혼혈아 등의 소수집단이 자의와 관계없이 징입에서 제외된 후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군가산점제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자의 경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의무고용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이 의무고용인원 수가 전체 장애자 규모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기업은 물론이고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도 의무고용인원을 채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군가산점제의 피해는 장애들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여성에 비해 규모가 적고, 따라서 목소리도 작은 장애자 집단에서, 이번 군가산점제의 문제가 성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그들의 상황이 묻혀지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김정열) 매우 타당하며, 이번을 계기로 장애자 정책에 보다 진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다.

이렇게 이미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편이다. 교육 인플레이가 극심한 우리 사회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대로 못 마친 최하층 또는 일탈 집단은, 그렇지 않아도 교육에 의한 차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제도적 피해까지, 그 누구도 문제제기조차 하지 못한 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전과자의 경우, 이미 건디기 힘든 사회적 편견에다가 이러한 제도적 소외까지 어디다 호소할 것인가, 너무나 소수여서 보이지 않는 고아, 혼혈아 등은 또 어떠한가.

군가산점제는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방안이지만, 그것은 아직 우리사회가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는 소수집단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군가산점제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구체적 방안을 재고해야 하며, 이번을 계기로 우리사회의 이러한 소수집단에 대한 정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한다는 사실이 명확히 부각된다.

3) 성문제

역시 군가산점제의 최대의 쟁점은 성문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여성이 최대 규모의 피해자라는 점과 함께, 앞서의 두 집단에 비해 보다 근본적인 논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계층문제는 병역비리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실질적인 해결이 어렵지만 방향은 비교적 간단하며, 소수집단 문제는 보다 복잡하지만 징집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고 소수집단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는데 비해, 성문제는 징집 자체로부터 보상에 이르는 문제 영역에서 보다 근본적인 평등과 차이의 여성 자신들 사이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1980년대 후반부터 세력화를 도모해온 여성집단의 힘이 상당하며, 군가산점 문제에 대해 부단히 문제제기를 해온 것도 여성이기 때문에 반격의 화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문제는 매우 힘든 복잡한 논점을 내포한 만큼, 궁극적인 군문제와 관련하여 설왕설래는 많을지언정, 군필자 보상문제의 명확한 타겟이 될 수는 없다. 앞서도 재차 말했듯이 현재의 징집제 하에서 소수집단과 여성은 군가산점제의 피해자이며, 군필자들의 피해의식을 유발하는 집단은 부당하게 현역에서 제외된 상류층과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필자 보상문제의 단기적이고 명확한 처방은 병역비리를 없애는 것과 새로운 보상 방안의 수립, 군자체의 개혁 등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성보호정책이나 여성채용목표제 등, 여성 우대 정책과 관련하여 군필자 보상정책은 갈등을 빚을 소지를 충분히 내포하므로, 차제에 군복무와 관련된 여성의 논리를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4. 제시된 대안을 둘러싼 논쟁구도

군가산점제 위한 판결 이후 실로 많은 대안들이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제안되었다. 그것은 평등과 차이에 관하여 궁극적으로 어떠한 관점에 바탕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른 입장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 차별, 역차별, 정의, 상대적 및 절대적 기준,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 효용성, 평등한 대우와 법 앞에서의 평등 등의 개념이 얹혀, 여성의 상황에 대한 다양한 설명방식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Foundez, 1995:3-19; Scott, 1998:761-768)

군가산점제와 관련하여 그러한 입장들은 대체로 다음의 네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관점의 차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다른 모든 대안이 수립되는 데에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 둘째는 차이 또는 상대적 평등을 인정한 위에 수립한 대안, 셋째는 (절대적) 평등을 전제한 대안, 그리고 그 둘의 절충안이 그것이다.

실질적인 군문제해결!

1) 필요조건

a) 군대의 개혁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군필자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글자 그대로 군대생활로 인생에서 그 2년 반을 상실해 버렸다는 느낌이며, 특히 억압적 군대생활에서 받은 피해의식도 매우 크다.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히 테러라고 할 수 있는 남성들의 욕설은 그러한 상실감의 폭발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어떤 대안에 앞서 군대의 민주화, 선진화를 이루는 것과, 보다 적극적으로 군생활이 제대 후 사회생활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군대 복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복무 중, 통솔력, 행정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거나, 컴퓨터, 영어, 각종 기술 등을 배울 수 있게 하고 자격증 습득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 그리고 군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동아리 활동 등이 고안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군대의 구조개혁, 정보화, 기술화, 과학화 등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서는 현재의 직업군인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동원예비군제의 효율적 운영, 지역방위 개념으로의 전환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군축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국방예산문제와도 분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안영민, 2000:103)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b) 병무비리 척결

병무비리를 척결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다. 그리고 다른 어떤 대안과도 상관없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대표적인 문제이므로, 군가산점제 관련 문제 제로서가 아니라도 사회의 발전을 위해 마땅히 없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다만, 병역면제나 보충역, 제2 국민역 등으로 부당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서, 현재 현역의 수요에 대하여 공급이 넘치는 현상에 주목한다면, 복무기간 축소와 연결 지을 수 있으며, 그것은 또한 국방예산과 관련되므로, 복잡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모든 다른 요소들에게도 불구하고, 병무비리를 척결하는 것은 그밖에 제안되는 여러 개혁안의 기본전제가 되는 것으로, 누구도 아무런 이의를 달 수 없는 필요조건이다.

2) 차이(상대적 평등)를 인정하는 대안

일단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남성에 대한 징병제를 존치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위에, 기존의 군가산점제를 대신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 해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제 위헌판결도 이 입장에서 서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판결은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을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을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이라고 해석한다. 그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은 안된다고 하는 정의에 기초한 것이기도 하다. (이육한, 1998) 모든 사람이 정당한 대

군가산제 존치방안철회!

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의 정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다. (Faudez, 1995:3) 이 해석은 여성과 남성은 모든 경우에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없는, 즉 차이를 가진 존재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남성만이 징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필자와, 교육·신체상의 문제로 인하여 징집에서 제외된 사람들과의 차이도 인정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여기서, 어떤 점에서 여성을 군대에 가지 않는 남성과 차이를 가진 존재로 보는가의 문제는, 차이를 인정하는 페미니즘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과제이다.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다는 점이 남성이 군대에 가는 점에 대해 차이를 인정한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로 주장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것은 출산이 자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 따라서 출산이 사회를 위한 행위로만 이해될 수 없다는 점 등, 수많은 난제를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이나 다른 소수 집단들처럼,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 온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을 규정할 것인가. 그렇다면 점차 여성의 사회적 약진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규정되어야 하나, 등등, 이 입장에서 여성이 정리해야 할 철학적 논리적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a) 군필자에 대한 다른 보상책의 모색

이러한 입장에서 군가산점제에 반대하는 것은,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보다 (위헌 판결에서, 병역의무의 보상을 위한 '제대군인... 법률'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군가산점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지반에 대한 피해 가능성 때문이다. 즉 보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산점제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보상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장차 다른 소수집단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할 보호정책, 사회적으로 누적된 잘못된 관습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와도 같은 근거와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집단에 피해를 주지 않는 보상 방안으로서, 앞서 논의한 군복무 자체가 보상이 되도록 군대를 개선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군필자에게 세금납부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 현재와 같은 호봉인정 등이 제안되고 있다. 가산점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제시되었으나, 기존의 혜택을 삭감하는 형식이 통상 그렇듯이 거센 반발에 부딪쳤으며, 복학생학비 지원안도 학생들이 장래 군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입대시기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b) 소수집단을 배려하는 정책의 확충

이 입장에서 결국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군가산점제가 다른 소수집단들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는 점이므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소수집단들에 대한 여러 지원 정책이 확충되는 것도 중요한

실질적인 군문제해결!

대안이 될 수 있다.

c) 군복무 기간의 축소

보상해야 할 복무 기간을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26개월의 사병 복무기간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는 데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복무기간의 단축은 국방예산의 엄청난 증대를 수반하며, 군대의 합리화 및 군축 문제와 직결되므로 간단치 않다. 그 동안 군복무 기간은 꾸준히 감소되어 왔지만,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다. 물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는 힘들겠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26개월은 병력수급을 고려한 적정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고 한다. (김창수, 2000) 병역비리를 없애는 것은 군복무 기간의 축소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고, 그역의 경우도 또한 현실적이므로 이 두가지를 같이 실현시킬 필요가 제기된다.

3) 평등 (절대적 평등)을 전제하는 대안

위와 같은 대안들과는 달리, 남성과 여성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보는 입장에서 제시되는 대안도 있다. 다른 아님 여성도 남성들과 함께 군에 가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장애인 등의 소수집단은 제외된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o) 남녀 모두를 포함한 징병제

남자에게는 징병제, 여자는 지원에 의한 입대가 현재의 제도인데, 이것을 남녀같이 징병제로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대체로 '억울하면 너희도 군대 가라'는 분노에 찬 남성들의 제안이지만, 이스라엘 등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치 현실성 없는 제안도 아니다. 지금까지 여성측에서 이 제안을 심각하게 고려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데, 적어도 왜 이 제안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단지 국방예산의 엄청난 증대, 군대 시설의 대폭적인 변화 등의 현실적 문제로서는 충분치 않다. 평등과 차이 사이의 철학적, 논리적 기반을 준비해야 할 과제를 우리는 앞에 놓고 있다.

b) 남녀를 포함한 모병제

반대로 현재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지원에 의한 입대를 남성에게도 확대시키자는 제안이다. 북한과의 대치 상태에서, 군대의 규모 감소와 약화의 위험이 있는 모병제가 과연 가능한가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의하고 있지만,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 군대가 가야 할 방향이 모병제라는데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축 자체의 가능성과 필요성, 미국 등의 나라에서 모병제로

군가산제 준치방안철취!

의 전환 후 병력이 약화되지 않은 점등을 근거로 모병제의 현실적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전문가도 있다. (김창수, 2000)

4) 절충안

마지막으로 위 두입장의 절충안으로 볼 수 있는 대안이 지난 1월 6일 국민회의에서 제안한 '국가봉사경력가점제'이다. 이것은 사실상 군가산점제를 존치시킨 위에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차이를 인정한 입장에 가깝다. 그러나 여성, 장애인 등에게도 봉사의 형태로 남성의 군복무를 대신하게 해 가산점을 주겠다는 방안이므로, 절충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모든 절충안이 그렇듯이 이것은 많은 현실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봉사 활동처 및 프로그램이 정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봉사자 수급의 불균형 문제와 봉사의 공식적 인정절차의 어려움, 한달에 0.1%라고 하는 수치의 불합리성 등 문제가 적지 않다. (우정자, 2000)

5. 맺음말

위 여러 대안들은 서로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상호 많은 점에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더욱 어렵기도 하다. 이 글에서 어떠한 대안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논의할 수는 없다. 다만,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에서, 그 대안의 여성주의적인 철학적, 논리적 기반을 정립하기 위한 이론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성대결로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논쟁의 구도의 정확한 지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성의 실천적 이론적 과제를 회피할 수는 없다.

군가산점 논쟁과정에서 드러난 사이버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나우누리 여성모임 miz 운영자 권김현영

이 글은 군가산점 논쟁을 통해 파생된 사이버 상에서의 여성의 발언권, 혹은 존재할 권리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 성폭력 등 사이버에서의 여성인권침해사태들이 발견되고 문제화되었지만 이것이 여성 개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군가산점 논쟁의 과정에서 드러난 특수한 점은 이러한 폭력이 여성 전반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다는 것, 게시판 등을 통해 보여지기로는 다수의 남성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어떻게 '군가산점 논쟁'이라는 특수한 사안에서 폭력이 더욱 증식될 수 있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폭력이 대대적으로 가시화된 상태에서 사이버 토론이 진행될 때 여성이 겪게 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으려 한다.

1. 왜 여성이 공격받는가?- 사이버테러의 형성과정

만지일보 편집부장 김도균씨는 군가산점 폐지에

대해 군필자들이 이토록 열을 내는 이유는 군대 생활에서 느꼈던 그 외로운 싸움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군대에서의 외로운 싸움을 여성들이 무시했다? 어떻게 했길래 그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

1999년 12월 23일 군가산점 위헌소송결과가 알려진 다음날부터의 사이버상에서의 글을 살펴보면 여성들이 군필자들의 아픔을 모른다는 분노가 토해졌고 그 근거는 바로 군가산점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자체를 가르켰다.

그렇게 해서 처음 집중적인 욕설과 비난을 들었던 여성집단은 이대와 여성단체(민주회, 여성연합)였다. 위헌소송을 낸 6명중 5명이 이대생이었는데 이같은 사실은, <폭로!! 위헌소송낸거 이대생들 짓> 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졌다. 자유광장 등에서 군가산점 위헌을 환영하는 글을 올린 나는 <너 이대지? 이 XX!>라는 메모를 받았고, 이후 논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때 욕설 등에 항의하지 내가 이대라는 사실은 나에게 폭력을 가해도 괜찮다는 주요요인으로 대답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성폭력성 메일과 쪽지를 계속해서 받았다. 여성단체에 관련해서는 허위소문이 집중적으로 유포되었다. 통신과 인터넷 여론의 가장 큰 특징은 매일매일 글을 몇 십개씩 읽지 않으면 대체 어떻게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인데, 여기서 사소한 오해가 발생하면 아주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진위를 가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을 이용하여 여성운동 단체에 대한 남성들이 조작되었다. 가장 극명한 예는 조리봉 사건

이었다. 조리봉이 여성성기 모양과 유사하므로 여성단체에서 불매운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고 있다는 식의 내용이었다. 이러한 공식을 따라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되었다. 말하자면 이런 식이었다. '군가산점 폐지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은 군필자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떤 여성들이 군가산점을 폐지하자고 하며 군필자를 무시했다. 또한 이 여성들은 우월의식에 빠져있거나 (이대에 대한 전반적인 편견이 이 논리를 쉽게 설득시켰다) 비합리적인 피해망상을 앓고 있는 집단(여성단체에 대한 허위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여성들과는 어떤 토론도 가능하지 않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우리는 폭력을 사용한다.' 사이버의 익명성을 무기로 삼아 이러한 여론형성은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미주(나우누리 여성모임)에서는 사이버테러에 관한 토론장에 온 많은 남성들은 사이버테러를 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여성들에게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군가산점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이 조작과 폭력 등의 방식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것, 다시말해 여성과여성운동을 폄하하거나 고의적으로 오해하면서 발언권을 확장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일으킨다. 그럼에도 언론은 네티즌에 성대결이 일어났다는 보도를 통해 이같은 일방적인 공격을 '사이버 성대결' '사내들 열받다' 등의 헤드카피를 뽑는 등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테러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보여주지 않았다.

2. 사이버에서 여성들이 사라진다.

미즈의 회원들 중 일부가 플라자와 미즈의 게시판 등을 통해 군가산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한 여성들에게는 협박 전화부터 스팸메일, 신상공개 등의 위협이 가해졌다. 한 남성네티즌이 미즈 게시판에 와서 사이버테러가 어떻게 조직되고 있는지를 밝혔다. 군가산점 폐지에 전자서명을 한 글을 갈무리해서 주소를 알아내고, 게시판을 뒤져서 핸드폰 번호등을 알아낸 후 남성네티즌들에게 동보메일을 보내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었다. 서명하는 것조차 위험한 상황이었다. 나는 여자들은 모두 정신대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한 남성네티즌의 글에 반박하는 글을 쓴 후 하루에 20번 넘게 협박전화를 받고 집 앞에서 찾아오는 등의 스토킹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논쟁을 통해 도출된 특이한 점은 통신/인터넷에서 반발하던 소수의 여성들에게 여성운동전반에 대한 모든 비판들이 집중되었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부모성 함께 쓰기와 호주제 철폐 등이 도마에 올랐고 여성고용할당제에 대한 시각을 질문했다. 여성운동과 별 관련이 없이 살지만, 임용고시를 준비하다 군가산점의 폐해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던 친구 한명은 자신에게 여성운동 대표인 것처럼 질문하는 것에 대해 매우 당황스러워 했다. 반면, 여성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우선적인 집중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논쟁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몇몇 남성들에 의해서 여성은 둘로 정확하게 나뉘어졌다. 페미니스트거나 페미니스트가 아닌 여성들로.

* 는 여성단체년들하고 한통속이다. 읽을 필요도 없

실질적인 군문제해결!

다”
“내 여자친구도 ‘대지만, 자기 학교애들 너무 피해의식에 빠져있고 엘리트주의라고 싫어한다. 좀 반성해라’

이런 상황에서 발언은 곧 그 자체가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커밍아웃 하는 것을 의미했다. 점점 여성들이 입을 다물게 된 것은 이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다. 내가 여성단체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증명해라. 관계있다면 네 의견을 들을 가치가 없다. 관계없다면 넌 아는데 아무것도 없다. 식의 공격. 너는 페미니스트이냐 아니냐는 선택에의 강요 사이에서 많은 여성들은 침묵을 선택했다. 그것은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으므로 저 단순한 질문 앞에서 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몇몇 남성들은 페미니스트, 혹은 여성단체를 ‘이기적이고 못생긴 피해의식에 가득찬 여자’라는 식의 매우 불온한 정의를 상상 속에서 세워놓고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 상상적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할말이 없어졌다. “나는 이런 의견을 가진 한 개인일 뿐이다. 연관시키지 말아달라”고 주문하면 끈질기게 여성단체 혹은 페미니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했다. 이것은 두말할 것 없는 마녀사냥이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인신상이 노출되어서 현실에서 위협이 가해지는 형태로 폭력이 확장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에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이같이 개인정보 누출과 현실적인 공포를 각오해야 했다는 점이다. 여성들에 대한 공격은 주로 성적이 언어(가만있을 때 입닥쳐, 내 X으로 막아주는 수가 있어-미주시삽 아이디어로 신고된 사례 중)를 동반하고 있었으며, 핸드

폰 등으로 위협을 할 때 역시 개인신상이 알려지는 것은 곧 강간에 노출될 위협이라는 암시가 잇따랐다. 발언하는 여성들에게 너무 많은 각오를 필요로 하게 하는 이 같은 현실은 여성을 사이버 공간에서 약자로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욕설과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의 무력감과 공포는 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무력감, 그리고 이에 응당한 보상과 대응책이 없다는 현실 속에서 깊은 패배감으로 작용하여 젊은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공격을 감당하지 못해 통신망을 이탈하거나 남성들과 논쟁하던 동호회를 탈퇴하는 등 스스로 활동반경을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3. 여성커뮤니티의 확산과 여성친화 사이버 예절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군가산점 논쟁을 통해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나와 내 친구들은 더 이상 논쟁에 참여하지 않거나, 논쟁을 포기하고 몇몇 남성들과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1) 여성신문, 2000.3.18 [컴퓨터 윤리에 페미니즘을 적용하자] “언어학자 수잔 해링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성차는 현실의 남녀관계와 닮은 꼴이다. (중략) 호전적인 표현방식과 위협, 조롱, 자기과시 등의 방식으로 긴 문장을 주로 올리는 남성들의 소통방식에 비해 여성들에게선 상대에 대한 지지, 사과, 감사, 위축 등의 태도가 두드러진다.”

군가산점 준치방안철회!

지금 필요한 것은 여성들의 커뮤니티의 확산과 여성친화적인 사이버 예절을 만들어 내는 일인 것 같다.

실례로, 여론이 집중되고 모이는 곳에서 여성들이 배제되는 과정에서 미즈는 충전과 격려, 소통가능한 비판이 가능한 공간으로 유의미했다. 군가산점 논쟁에서, 여성들이 비난의 집중포화를 맞으며 점점 사라져갈 때 조차도 미즈에 가입을 신청하는 여성들은 더 증가했다. 12월부터 2월까지 가입을 원하는 여성은 200여명에 달했다. 이 기간 중에 여성모임으로 가입하는 여성들 중 이루는 욕설메일을 신고할 곳을 찾아서 왔다고 한다. 이렇게 여성들의 사이버 커뮤니티는 사이버에서의 공포와 위축감으로부터 여성들을 지켜주고 축출되거나 포기하려고 하는 여성들을 잡아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사이버 커뮤니티가 여성들만의 고립된 공간으로 게토화되지 않게 위해서는 지금의 사이버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네티즌들이 합의하고 공유하는 사이버 윤리를 창출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사실상 네티즌들은 그동안 많은 논쟁을 통해 익명이 가질 수 있는 사이버상의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온라인 성폭력 등 여성들에 대한 폭력은 여성들에 의해서 제기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문제로 언급되지 않아 왔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 공간으로 사이버 스페이스를 재정비해야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 스스로가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등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조직화

해야 할 것 같다.

<이 글은 여성과 사회 11호에 실릴 글을 수정, 요약한 글입니다.>

군복무제도의 변화를 위한 분석과 대안²⁾

김창수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정책실장)

1. 들어가는 말

1999년 12월 23일 군 가산점제도가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군가산점 제도는 남성과 여성의 성대결로 보일 정도로 쟁점이 되었다. 군 경력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책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산점제도 폐지'가 '군경력에 대한 보상 반대'의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남성들의 반발이 컸다.

인터넷을 통해서 표출된 남성들의 거센 반발은 '우리가 군대가서 청춘을 바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아느냐, 국가가 이런 우리들의 고생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여성들이 그것까지 부정해서 되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돈 없고 백없는 사람이 강제징집되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남성들을 향해서 싸움을 건 여성단체들은 부도덕하다는 것이 대다수 남성들의 절대적인 의견이다.

남성들의 의견은 여성단체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대부분이었지만, 남성들의 의견에는 강제징집에 대한 반발, 군대 회피 심리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병무비리의 만연으로 자신들만 강제징집된다는 피해의식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 논란이 징병제 아래서 한국 남성들의 군복무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사건이므로 군가산점 논란에 대한 제도적 해결은 바람직한 군복무제도를 검토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바람직한 군복무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 뿐만 아니라 제대군인들의 지위 향상과 군대 운영의 민주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군축은 병력감축, 장비감축, 징집제도의 변화, 방위예산 재조정 등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병력감축과 방위예산 재조정은 무장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작고 효율적이고 강한 군대를 만드는 구조조정의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이 군 무기도입 비리를 근절시키는 대안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대의 민주화를 이룩하여 군대 인권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이 글은 학술단체협의회 제5차 연합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냉전제도의 해소와 군축을 위한 분석과 대안'에서 병역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현재적인 관점에서 재정리한 글임을 밝힌다. '냉전제도의 해소와 군축을 위한 분석과 대안'의 전문은 "한국사회의 민주적 변화와 정책적 대안", (1992, 역사비평사)에 수록.

현재의 노동집약적인 한국군 구조를 소수정예의 과학군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병력규모를 줄이고, 병역의 수급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서 현재의 징집제도를 전환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병력규모 감축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도에 따라 과대한 상비병력을 감축하여야 한다. 한국의 상비병력규모는 국방부가 91년 9월 5일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안에 따라 방위병제도가 폐지되어 70만 규모가 되었다. 병력규모는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지만 통상 적당한 병력규모는 인구의 1%를 들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의 병력규모는 표에서처럼 인구의 1%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병력규모에 대한 고정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병력규모는 정치지도자들이 군사전략적 감각에 의해 임의로 정해야 하는 숫자이다.

미국의 제네바 군축회의 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제임스 굿비 교수는 통일이전 남북한의 군사력의 최종수준을 10만명으로 제안하기도 하였다.³⁾ 북한도 90년 5월 30일 발표한 5.30군축안에서 남북한이 군축을 합의한 후 4년동안 3단계로 병력을 감축하여 1단계에서는 30만 유지, 2단계에서는 20만, 3단계에서는 10만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당한 규모의 방위력이란 병력규모통제를 통하여 소수병력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상비병의 수준을 30만으로 하여 포괄적 안보개념에 입각한 군대의 전문화를 꾀하고, 군대와 사회의 민주화로 다양한 수준의 위협에 대처하는 사회적 대응능력을 향상한다면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30만으로 감군은 그동안 북한도 주장한 바 있으므로 북한의 대응을 유발하여 남북한의 평화정착에 기여함은 물론, 남북의 60만 상비병력은 국제적인 상황변화에 대처하고 통일조국의 방위에도 적합한 규모가 된다. 한국군을 30만으로 감군하고 여기에 따른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병력을 배치하면된다.

한국군의 병력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나토국가들과 미국 등의 병력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6%-0.8%인데 비하여 우리는 1.7%가 된다. 병력을 30만으로 줄일 경우 인구에서 차지하는 병력의 비율은 약 0.7%가량이 되어 평균비율을 유지하게 된다.

3. 병역제도의 전환

3) 제임스 굿비, '통일을 향한 한반도 군비통제절차' '국제정세 90, 8, 101쪽.

실질적인 군문제해결!

아울러 30만으로 감축한다면 결국 현재의 징집제는 해마다 18세가 되는 징집대상인구가 40만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제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 지원제로 전환하지 않고 30만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징집대상인구를 고려하여 볼 때 복무기간이나 형평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30만으로 감축할 경우에는 병역제도 자체를 수정하고 이에 따른 예비군제도 역시 정비해야 한다. 한국의 병역제도는 30만 감축을 위한 보완 조치로서 재정립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병역제도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비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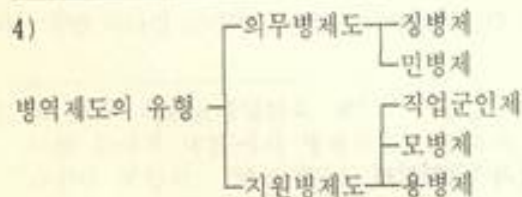
〈표1〉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징병제	-병역의무의 형평부과 -우수자원자의 확보 -군의 단결과 지휘의 용이 -예비군정예자원의 확보	-병무행정의 복잡 -국민부담의 과중 -특수장비운용요원의 확보곤란 -장기복무 군전문요원의 확보곤란
모병제	-장기복무로 인한 국민부담경감 -병역의무로 인한 압박해소 -특수자질자의 확보 용이	-유사시 예비군동원체제의 확보곤란 -국토방위를 일부국민이 담당 -병역의무에 대한 사명감 결여 -국가예산소요

자료:김문성,『병무행정론』,44쪽,법문사,1989.

병역제도는 의무병제와 지원제로 구분할 수 있다.⁴⁾ 의무병제도는 국민모두가 방위하여야 한다는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하여 국민에게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고 지원병제는 국가와 개인의 계약에 의해 병역에 복무하는 제도이다.⁵⁾ 일반적으로 징병제와 모병제는 〈표1〉과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순수한 의미에서 징집제나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드물다.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징집제와 지원제를 혼용하는 변형된 형태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서독,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의무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5) 김문성,『병무행정론』,38-42쪽,법문사,1989.

군가산제 준치방안철취!

중 대부분은 지원제와 혼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국가들은 징병제를 채택하였지만 모든 징집의 무자를 징집하는 것은 인력의 낭비라고 판단하여 지원제를 보완한 징집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토국가들의 경우 지원병의 규모가 징집병을 초과하고 있다.

근대국가가 성립되면서부터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하여 의무병제를 채택하였으나 갈수록 의무병제의 모순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영국 등의 국가는 지원제로 전환하였고 대부분의 나라는 지원제를 가미하고 있는 것이다. 의무병제를 채택한 이들 유럽국가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⁶⁾ 이러한 문제점들은 한국의 경우도 거의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첫째, 의무병제에서도 인력비용이 상승한다.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징집병에 대한 보상문제가 대두되어 징집병에게도 민간사회와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인력비용의 상승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병역의무의 불평등성이 나타난다. 국민개병제와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이유때문에 불공평성이 두드러진다. 영국이 1962년에 완전지원제로 전환한 것은 이러한 이유때문이다.

셋째, 군복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므로 장기근속자가 부족하여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난다. 현대무기체제는 높은 숙련도때문에 전문인력의 장기근속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병사들이 의무기간이 끝나버리면 전역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의 국가들은 징병제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무기간과 군무시간을 단축하고, 유급휴가를 확대하며, 징집병에 대한 훈련은 비전투부대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징집병은 상비군이든 예비군이든 단순한 일에만 복무시키고 있다.

징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점차 근거를 잃어가고 있다. 서독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안보상황, 국민의 방위의식강화, 예산절감 등의 이유를 들어서 징집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급속한 변화에 의해 안보상황이 변화와 하였다. 또한 국민의 방위의식은 징집제에 의해 고취되지만은 않는다. 도리어 완전한 의미를 지닌 모병제가 국민의 애국심과 충성심에 기초하는 것이다. 예산 역시 앞서 살핀 것 처럼 징집제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징집제의 근거가 약화되고 있다.

미국은 73년 7월 1일부터 완전지원제를 채택하고 있다.⁷⁾ 지원제를 채택한 이후 제기되는 문제들

6) 의무병제의 문제점은 윤상운,『석사장교제도의 개선방향』,『국방학술논총제2집』,209-300쪽,국방연구원,1988에서 참고함.

7) 미국은 게이츠 위원회의 연구보고를 토대로 "유사시 징병제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완전지원제를 채택하였다. 게이츠 위원회의 보고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국가에서 일정기간 사병군무를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군복무의 매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실질적인 군문제해결!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의 질적수준이 불만족스럽다. 둘째, 미국의 국방을 흑인과 사회빈곤층에게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영외거주자가 전체병사의 25%가 되어 군의 약화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원제 아래서도 81년 이후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지능수준 역시 징집병수준에 근거하여 병력의 충원에 대한 양질적문제들은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 지원병의 인건비는 국방 인건비의 10%에 불과하므로 예산의 증가도 우려하는 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지엽적인 문제이다. 미국의 지원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대가 미국국내와 국제사회에서 역할에 대한 평가를 보류하고 본다면 전력수준을 유지와 병력수급 및 형평성을 판단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지원제를 채택하여 병력수급과 형평성을 해결하면서도 전력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 한국 징집제도의 문제점

1) 병력수급과 형평의 문제

병역대상자의 수급과 형평을 고려하면서도 전투력을 보유할 수 있는 병역제도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이다. 특히 한국처럼 국민개병제에 입각한 의무병제를 채택하고 병력규모를 제한한 경우에는 수급과 형평의 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에서도 병역대상자의 수급과 형평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즉 병역대상인구가 증가하고 정규병력의 규모와 복무기간이 한정된 상태에서 징집제도를 실시하니까 병역수급과 형평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병역인구의 과잉으로 인한 병역의무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위병제도를 신설하여 군전투력의 보강과 함께 잉여자원의 흡수를 피하여 왔다. 병역특례제도로 되어버린 병역의무특례제도 역시 원래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의 징집제도가 계속된다면 거대병력을 거느리는 병영국가에서 탈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복무기간은 징집제도나 병력유지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제도나 병력의 규모와 관련하지 않는 복무기간의 단축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한국육군의 복무기간이 26개월로 단축된 것도 방위

둘째, 지원병제도로 전환은 군대에 대한 인식을 비굴 것이다.

셋째, 전원지원제는 징집병과 지원병으로 구성된 현재(73년 이전)의 군대와 다르지 않을 것이며 보다 나은 대우를 하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네째, 취업기회의 균등과 고용증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섯째, 잉여인원의 누적으로 형평의 구현이 어렵다. 오동렬, 「각국병역제도비교연구」, 107쪽, 204쪽, 병무청, 1990.

군가산제 준치방안철회!

병폐지에 따른 병력규모 조절의 노력이다. 그러나 유럽국가들에 비해서는 26개월의 복무기간도 길다.

남한의 병력규모를 30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한다면 병역제도는 복무기간의 조정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8) 적정복무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원제로 전환은 필요하다. 결국 징병제도를 지원제로 전환하는 것만이 이러한 병역제도의 모순을 해결하는 길이다. 9)

2) 징집제도의 문제와 군대민주화

병역제도를 지원제로 전환할 필요는 병력수급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뿐만은 아니다. 현재 징병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들의 징병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0) 이러한 현상은 사병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989년에 실시한 「장병의 의식구조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11)

첫째, 현역복무를 안하는 청년들을 행운아로 보며, 직무에 대한 만족감도 낮고, 전우와의 일체감, 상경하에 분위기, 지휘관에 대한 존경심, 군인으로서 자부심도 낮다.

둘째, 개인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강한규제나 인격을 매도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강한 거부반응을 보인다.

셋째, 군법이나 군기유지활동이 너무 엄중하여 형식에 치우쳐 있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 군의 현실이라고 본다.

넷째, 군생활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응답도 많으나(59.3%), 군복무의 최대목표는 시간을 때워서 성한 몸으로 제대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많다(30.2%).

8) 복무기간과 병력수와 관계 (연간징집필요인구=현역병수/복무기간*12)에 따라서 징집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30만 병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복무기간은 약 10개월이라고 산출된다. 연간징집대상인구를 35만이라고 가정한다면 30만으로 감축하였을 때 복무기간 A는 $350,000=30,000/A*12$

9) 징병제를 지원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원제와 징집제를 혼용하는 제도를 과도기적으로 사용하면서 궁극적으로 지원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10)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사회의 자유주의적 가치는 군대의 가치와 충돌하고, 군생활의 사회생활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감되는 징병제 운영에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다'라는 견해가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권희일, 정주성, 「병역제도의 발전방향」 「국방논총 제11호」, 국방연구원, 179쪽, 1990.

11) 박재하, 타고순, 「한국의 전문직업성」 국방연구원 「국방논집 제10호」 118-123쪽, 1990에서 재인용.

실질적인 군문제해결!

이러한 경향은 장교집단의 의식성향에도 나타난다. 270명의 장교에 대한 같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소한 정년퇴직을 할 생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2.9%인 35명에 불과했다. 앞으로 근무하면서 고려해보겠다는 사람이 132명이고, 기회가 있으면 전역하겠다는 사람(69명, 25.5%)과 가능하면 즉시 전역하겠다는 사람(34명, 12.5%)이 38%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사병들과 장교들에게 징병제도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인 군복무에 대한 동기 부여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²⁾ 국민이나 사병들이 군에 대한 가치를 사회생활에 대한 가치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은 변화된 국제정세, 징집제도의 강제성, 군대의 낙후된 민주주의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 국제정세나 남북관계의 변화는 징집제도를 신성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라고 여기기 보다는 강제성 있는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군대내의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분위기는 사병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원인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개인주의가 만연하여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었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징병제도의 개선과 함께 근본적으로 군대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독이 병역제도개선과 함께 군의 시민화와 정치교육을 통한 문민우위적 통제하의 군위상정립, 나치시대의 정치적 특권화와 무조건적 굴종적인 군대청산, 군내부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병사 개개인의 권익신장과 양심의 자유를 추구할 권리인정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군 민주화를 이루기 위함이다.¹³⁾

징집제를 지원제로 전환한다면 직업군인제도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장교와 하사관은 직업군인제를, 사병은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⁴⁾

군대가 민주화되고 정권안보가 아닌 국가안보의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것과 군제도의 개선은 함께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아울러 군대의 전문성, 기술성,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활조건을 향상

12)사관생도들의 입교동기는 가장 많은 27.9%가 생도동경이고 부모나 친지의 권유 18.7%, 경제력 부족 14.4%로 나타났다.한국국방연구원,「사관학교 교육제도 개선연구」,박성렬,「군조직에서 형식주의에 관한 고찰」,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42쪽,1990에서 재인용.한편 하사관의 장기복무지원동기는 특별한 대체방안이 없어서(40.4%)가 대부분이다.박성렬,앞의 글,43쪽.

13)오동렬,앞의 책,195쪽

14)직업군인제란 군인으로서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선병된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을 위하여 보수가 지급되며,군인의 길에 생애를 바칠 만한 보람이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도록 조치가 마련된 제도이다.

모병제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국가와의 계약으로 군별,신분별,그리고 병과별 희망에 따라 지원하여 병역에 복무하는 제도이다.모병제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애국적의식에 바탕을 둔 제도라는 점에서 용병제와 다르며 명예로운 높은 직위 등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 등 군인의 길에 생애를 바칠만한 보람있는 것으로 인식할 만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직업군인제와도 구분된다. 김문성,앞의 책,41쪽.

군가산제 준치방안철회!

하고 직업군인제도를 도입한다면 지원제는 징병제라는 냉전시대의 제도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¹⁵⁾

지금 보유하고 있는 16만 직업군인을 유지하고 여기에 14만의 지원병을 모집할 수 있는 군대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확보한다면 30만의 정예군대가 구성된다.그리고 지원자 개개인에 대하여 능력과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14만 지원병의 군복무기간은 장단기로 구분할 수 있다.¹⁶⁾

복무기간은 역종별로 필요로 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기간, 상승하는 기간, 초고점에 이른 시기,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상승의 둔화여부를 검토하여 설정할 문제이다.¹⁷⁾

그렇다면 지원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군대의 민주화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병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 직업군인과 지원병의 사회적 출신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¹⁸⁾

5. 지원제와 예비군의 성격

1)향토예비군의 성격과 운영과정

병역제도를 지원제로 전환한다면 예비군제도 역시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 뿐더러 예비군제가 안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수술이 불가피하다. 예비군을 편성하는 이유는 상비군의 유지를 비용과 군형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이다.¹⁹⁾ 즉 유사시 요구되는 예비군은 평상시에도 막대한 낭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향토예비군제는 이러한 예비군 고유의 기능을 담당과는 거리가 멀다. 도리어 한국의 향토예비군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예비군과는 성격이 다른 기형적 제도이다. 예비군이 필요한 이유에 따르면 예비군은 유사

15)군의 기술성과 전문성이 직업군인제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한용원「군사발전론」,327쪽,박영사,1989.

16)미국의 경우 현역사병으로 복무하는 기간은 2년제,3년제,4년제가 있다.

17)전투능력은 주특기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2년 이상이면 충거의 향상되지 않고,훈련방법의 개선으로 2년 이전에 전투능력은 충분히 숙달된다.

장병옥,「우리예비군의 개혁방향」,한국국방연구원,「국방논집 17호」

18)지원병과 징집제를 혼용하는 국가들에서 징집병에 대한 권익보장은 직계가족과 부모에게 생계비 지원,제대후 취업보장,병역으로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면제나 유보 등의 조치를 취한다.오동렬,앞의 글,133쪽

19)김문성,앞의 책,231-232쪽.

시에 대비하여 상비군에 비금가는 전투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예비군은 총체전력의 일부로서 독자적인 전력을 형성하여 상비군과 협력하여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²⁰⁾

미국의 경우는 지원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역복무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는 예비군에 복무해야 한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말하면 선택적 지원제라고 할 수 있다. 예비군 긴급예비군은 병역수준을 290만으로 제한하고 법정기간을 복무하며 유급이다.²¹⁾ 미국의 긴급예비군은 부시대통령의 동원령에 의하여 걸프전에 15만이 참가하였는 등 상비군과의 동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향토예비군제와 정예예비군창설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징병제’²²⁾를 지원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비군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그렇다면 병역제도를 지원제로 전환하고 예비군을 유사시 전력으로 재조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향토예비군제도를 완전폐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선별지원제를 채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별지원제는 현역지원과 예비병지원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징집대상인구에 대한 형평의 구현때문에 필요하다. 즉 징집대상자가 현역과 예비역 가운데서 선택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제 아래서 현역의 지원유인책이 되면서 동시에 유사시 전투력을 보유한 예비군을 확보하는 길이다.

이 경우 지원예비군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기초적인 훈련을 한 다음 일정기간 예비군에 편성될 수 있다. 이 경우의 예비군 편성규모와 기간은 전투력,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다. 병력규모는 상비군과의 비율을 고려하여 약 60만이면 적합할 것이다.²³⁾ 앞으로 징집대상인구는 약 35만 수준이므로 예비군 편성기간을 24개월로 한다면 인력수급에는 차질이 없게 된다. 필요하다면 예비군의 손실보충을 위한 대기예비군을 구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르면 향토방위, 전시동원의 성격을 지니는 지금의 향토예비군의 성격과는 완전히 다른 정예예비군부대가 편성된다. 이는 상비군을 소수정예화하고 비상시에 예비군이 상비군과 동반

관계속에서 즉각 전력화되는 바람직한 구조가 정착되는 것이다.

V. 맺음말

현재의 병역제도는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분명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병역제도 개선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0만 감축조치는 병역제도의 구조적인 변혁을 가져온다. 병역제도의 개혁은 그 자체의 문제점 때문에도 불가피하다. 징집제를 지원제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원제로 전환은 병력수급과 형평의 문제로 인하여 현역과 예비역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직업군인제에 의한 현재의 16만 규모를 유지하는 직업군인과 모병제에 의한 14만 규모의 사병을 지원할 수 있다. 이들의 사병의 복무기간은 18개월 정도에서 검토한다.

둘째, 향토예비군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성격이 모호하고 불필요하게 비대한 현재의 향토예비군을 폐지하고 지원병제도와 결합할 수 있는 예비군을 창설한다. 현역지원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예비군 복무의 의무를 지닌다. 예비군의 규모는 60만, 편성기간은 24개월정도가 적합하다.

셋째, 이러한 조치들은 남한이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은 단계적일 수가 있다. 단계적 과정에서 북한의 대응 조치가 뒤따른다면 상호군축으로 발전한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냉전제도의 해소와 평화정착의 관점에서 병역제도의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현재의 징병제도는 제도적으로도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평화운동은 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관점을 뛰어 넘어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징병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평화운동단체들이 병역제도에 대해서 강한 문제제기를 해야만 군 가산점제도가 위헌판결 이후 남성과 여성의 성대결로 변질되는 상황에서 병역제도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병역제도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구해야만이 남성, 여성, 장애인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

20)장병옥, '우리예비군의 개혁방향',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논집」 17호, 283쪽, 1992년.

21)미국의 예비군은 육군과 공군의 주방위군, 연방예비군에 속하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군, 해안경비대로 7개 군별로 구성되어 있다. 역종별로는 긴급예비군, 대기예비군, 퇴역예비군으로 되어 있다.

22)김종대, '1년 6개월 지원병제도를', 「길을 찾는 사람들」 1992.3, 73쪽

23)나토국들의 상비군과 예비군의 비율은 60:40이다. 우리는 지원제를 실시한 것을 감안하여 이보다 예비군의 비율 약간 높일 수 있다.

군대, 남성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적 사회 재생산의 보루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3학년 전김명훈

0. 들어가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사회적인 것이다.’
현재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군가산점제 철폐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보편적인 평등권의 문제에만 그 논쟁의 범위를 국한시킨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군가산점제는 남한 사회의 가부장적 사회구조, 한반도의 정치적 분단 구조 등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회적 모순 구조와 그 사슬을 같이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군가산점제를 옹호하는 가장 큰 집단, 군 예비역들의 논리를 뒤받침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아마 군대라는 곳일 것이다. 군대를 다녀 온 대다수의 남성들은 개별적 경험으로써 군대를 인식하고 있지만 군대는 결코 개별적인 요소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인 요소인 것이다. 여기서는 본인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군대가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남성이데올로기의 생산²⁴⁾

24) 이영자 교수는 군대에서 체질화되는 남성이데올로기로서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첫 번째는 남성 우월주

1-1. 여성의 성적 대상화

군대에 있을 때 휴가나 외박을 나갔다 오는 고참이나 동기들을 보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부대 밖에서 여자, 주로 창녀들과 섹스를 했는가 안했는가 하는 얘기였다. 창녀들과 섹스를 하고 들어온 병사들은 그 경험을 자랑스럽게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고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부족한 취급을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병사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다. 군대내 프로그램 중 ‘정신교육’ 시간이라는 형식적인 교육 프로그램 시간이 있으면 이 시간에 교육을 들어온 군 간부들은 주로 자신들의 성적인 경험-예를 들어 어떤 이발소에 가서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 여자가 참 기술이 좋더라 혹은 어떤 단란주점에 가서 여자하고 섹스했는데 그 여자는 어떠하였다 등을 병사들에게 말하는 사례가 비밀비재하다.

의의 조장, 두 번째는 남성본위의 성관념과 본능적인 성생활의 체질화와 마지막으로 군사적 권위주의의 사회화인 것이다. 이영자, 『이데올로기』, 이영자와 지음, 『성평등의 사회학』, 1994, 한울아카데미, 311~312쪽

또한 부대원 전체가 내무반에서 취침시간에 밖에서 구하여 온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포르노를 집단으로 시청하기도 하고 이를 적발한 간부가 이 테이프를 사무실로 가져가 혼자서 보는 사례들도 종종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적인 성의 문제가 아니고 남성들만이 모인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남성의 성본능을 당연화 시켜내고, 여성을 성적대상으로만 간주하게 하는 남성 중심의 성관념을 내재화시켜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1-2. 군사적 권위주의

군대에서는 시키는 것은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사고가 아주 당연시 된다. 그러한 지시의 합리성과 문제제기는 한낱 사치로 인식될 뿐이고 그러한 문제제기를 시도한다면 그 사람은 군대에서 28개월간 적히는 고달픈 생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배-복종의 관계, 이른바 군사적 권위주의와 어찌보면 파쇼적 형태에 가까운 각각의 개인들을 억압하고 이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관철시킨다. 군대에서는 모든 것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연결된다.

개인적인 군생활을 회고하자면 신병교육대에서 열차려는 기본이었고, 훈련병중에 한 명이 자신의 술가락을 잊어버렸다고 조교들한테 군화 발로 얻어 맞는 것을 본 것이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폭력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부대로 배치된 다음에는

모든 것이 폭력이었다. 60여명의 부대 고참들의 서열을 외울때도 주먹과 발길질이 날라왔고 당시 보직이 전화교환병이었던 나는 800여개의 전화번호를 외우면서 이른바 ‘원산폭격’이라는 열차려 자세로 전화번호를 외우기도 하였다. 간부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기에서 군대에서의 책임전가의 방식도 눈여겨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된다. 폭력이 최상급 자에게서 최하급자로 내려오는 일은 거의 없다. 이것도 계급의 구분에 따라 내려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려올 때마다 그것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이었다. 상급자에서 하급자로, 그 하급자에서 더 하급자로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군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계급과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과 자신보다 약자인 사람들에 대한 폭압적인 지배였던 것이다.

물론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이런 구타와 열차려는 금지사항이었다. 그러나 군대라는 조직은 원활한 조직 운영과 상명하복의 계급정신 속에서 그러한 행위들이 개인들이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직적, 사회적 방식으로 조장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군사적 권위주의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가부장적 권위주의로 전파시키고 그것을 재생산시켜 내는 것이다. 군대에서는 군대내 약자인 자신보다 낮은 계급을 폭압적으로 지배하고 군림하였지만, 군대의 사회에서는 남성보다 사회적 약자-대부분이 여성일 것이다-들에게 그러한 권력 관계를 강요하며 억압적 질서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렇게 군대내 폭력적 권위주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주요 생산 근거로

실질적인 군문제해결!

서 작용한다.

1-3. 군대와 비군대의 차별화

본단 국가에서의 신성한 의무, 실제로는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만이 지는 의무라는 이중적 논리가 지배하는 국방의 의무는 그 이중성으로 인하여 군대를 갖다 온 사람들은 한 때의 경험할 수 있는 추억으로도 기억되기도 하지만 28개월이라는 시간에 대한 집착, 그 시간동안의 군대에서의 폭압적인 조직에 의해 당했던 개인적인 기억들로 인하여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의 형태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런 보상의 형태는 군대를 다녀 오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화로 구체화된다. 물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군대를 기피한 사람에 대한 차별화도 나타나지만 대부분이 신체적 부적격이나 정상적인 면제사유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군미필 남성이나 여성들에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차별하는 형태로 구체화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보상에 대한 요구와 자신들이 겪었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불만의 표출은 국가에 대한 올바른 요구로 조직화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은 개인적, 집단적 차

25) 이러한 현상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같은 부대 전역자끼리의 모임을 갖는다든지, 군대 예비역만의 문화 또한 대학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매스미디어 역시 이러한 사고들을 정형화시킨다. 대표적인 예로, 모 방송국의 '신고합니다'라는 프로그램과 박신양이 나오는 모 맥주회사의 광고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원에서 자신들보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러한 칼을 향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을 제외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로 소외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2. 올바른 군가산점 논쟁을 위하여

군가산점제는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제도이며, 평등한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반드시 보편성의 차원에서 철폐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제도가 징병제인 이상, 28개월의 시간을 소비하고 온 남성들에게도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은 다른 사람들은 희생시키고, 소외시켜가며 얻는 보상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현재의 군대라는 사회를 전체 가부장적 사회 구조를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도구로써 사용하고 있는 국가권력에 대한 요구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군대의 폭압적인 계급구조와 운영원리에 대한 문제제기와 한낱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시키는 군대문화와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을 28개월이라는 시간을 소비하지 않을 수 있는 문화와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더 이상 하나가 다른 하나를 희생시켜 가면서 자신의 이득을 생기는 구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구조를 없애고 양성평등의 사회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으로써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에 남녀 모두 같이 나가야 할 것이다.

군가산점 존치방안철회!

실질적 군문제 해결과 군가산점 존치안 철회를 위한 전국 비상대책 위원회 '낮은시선'을 제안합니다.

▶ 실질적 군문제 해결! 멈출 수 없습니다.

군가산점 존치안으로 논쟁의 화두로 떠올랐던 군문제는 다시 총선 뒤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히려 군대문제가 아닌, 갈수록 격화되어 가는 남녀대립구도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군문제를 은폐하고 '군이데올로기'가 강화하려는 보수정권과 '안보이데올로기'에 묶인 대다수의 민중들의 인식들을 바꿔낼 실천을 다시 기획해야 할 것입니다.

▶ 군가산점 존치안은 철회시켜야 합니다.

장애인, 여성, 군미필자에게 군가산점 존치안이란 그들에게 '노동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군가산점 존치안으로 인해 차이를 차별로 고착화시킨다는 것이 더이상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 주기도 합니다. 군가산점 철회 없이는 이 땅의 평등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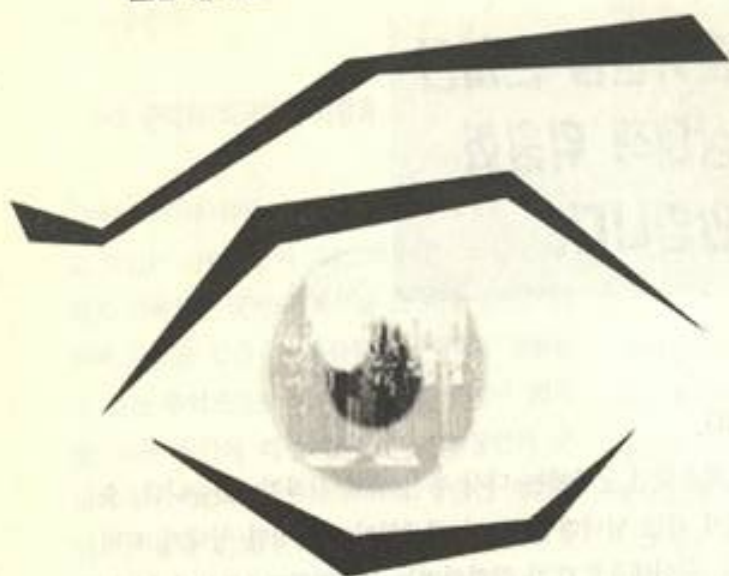
'낮/은/시/선'은

- 실질적인 군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제기를 해나갑니다.

- 군문제에 대한 해결대안을 함께 모색하려 합니다.

- 여성, 장애인, 군미필자의 평등권 쟁취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군문제해결!



1. '낮은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실질적 군문제 해결과 군가산점 존치안 철회를 위한 각 대학 선전 전략을 고민한다.

- 상반기를 중심에 둔, 시기시기별 선전전략 세움
- 시기별 선전계획
- 설문조사

▶ 4월 첫째주, 실질적 군문제 해

결과 군가산점 존치안 철회를 위한 '집중행동주간'을 기획한다.

- 서울의 2, 3개 대학과 지역의 몇 개 대학을 거점으로 한 '집중행동주간' 기획
- 점심시간, 저녁시간 때 할 수 있는 선전전, 설문조사를 기획한다.
- 우리의 요구를 퍼포먼스로 표현한다.

▶ 실질적 군문제 해결과 군가산점 존치안 철회를 위한 '실천대회'를 구상한다.

- 새천년 민주당과 국회, 정부를 상대로 한 '실천대회' 참여

▶ 군문제에 대한 해결대안을 고민하고, 알려나간다.

- 많은 자료를 취합하고, 대안을 제시해나간다.

2. '낮은시선'과 함께 합시다.

- '낮은시선'과 함께 하고 싶은 학생회, 대중운동단위, 개인은 모여주십시오.
(나우누리 아이디 : 이화여위, 참세상 아이디 : tsSMSM)